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
----------	-----

발의연월일 : 2014. 12. .

발 의 자 : 이한구박영애 의원  
(찬성자 5인)

## 1. 제안이유

- 가. 인구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인체조직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인체조직의 기증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현행 조례에서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지원 등이 부재하거나 미흡하며 장기등의 기증과 달리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장려정책이 부족함.
- 나. 이에 따라 장기등과 더불어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여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장려 추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 다.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불임 참조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등록 및 접수창구"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희망자가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채용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장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의

## 감면

3. 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의 감면
4. 조직기증자 및 장기등기증자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으로 유족 중에서 인체조직 및 장기등기증 이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인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제4조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홍보대사 위촉)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기관 및 단체(기업 및 프로스포츠 단체를 포함한다)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기증 장려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 경비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위촉된 등록 및 접수창구와 위원회 위원 및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각 설치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첨 1]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checkbox"/>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li></ul></li> <li><input type="checkbox"/>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27조(조직은행 등에 대한 지원)</li></ul></li> <li><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기본법<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li></ul></li></ul>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직은행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0.3.17. ]

[별첨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 홍보대사의 홍보활동 경비 지원 : 조례(안) 제9조제3항
-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조례(안) 제10조제1항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3. 미첨부 사유

- 홍보대사의 활동비나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 등 기존 사례가 없어 조례 시행 이후 보다 면밀한 예산소요 분석 및 검토 필요

###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이 한 구 의원